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00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 백승아·박홍배·강유정

이기헌 · 김동아 · 최기상

김남근 · 김준혁 · 박해철

임미애 · 오세희 · 이광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을 배치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 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법률 제 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링으로 정한다"를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 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②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	③		
(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	<u>정</u>		
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	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u>한다</u> .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		
	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		
	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